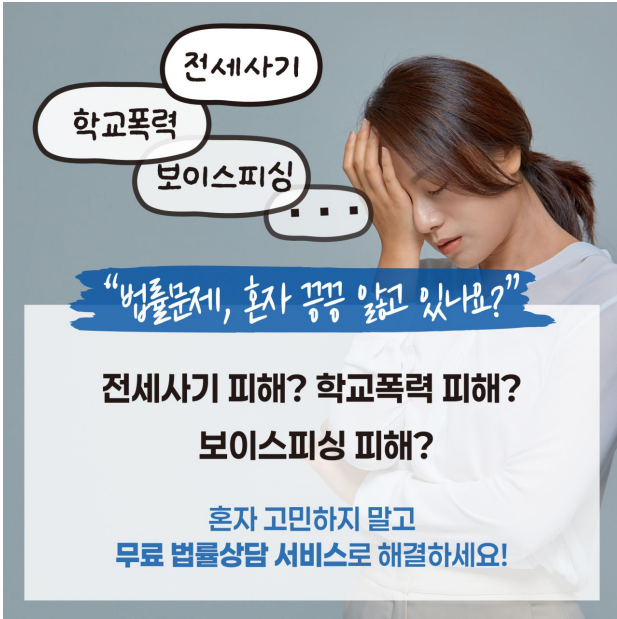


생활에 유익한 법무상식



무료법률상담 이용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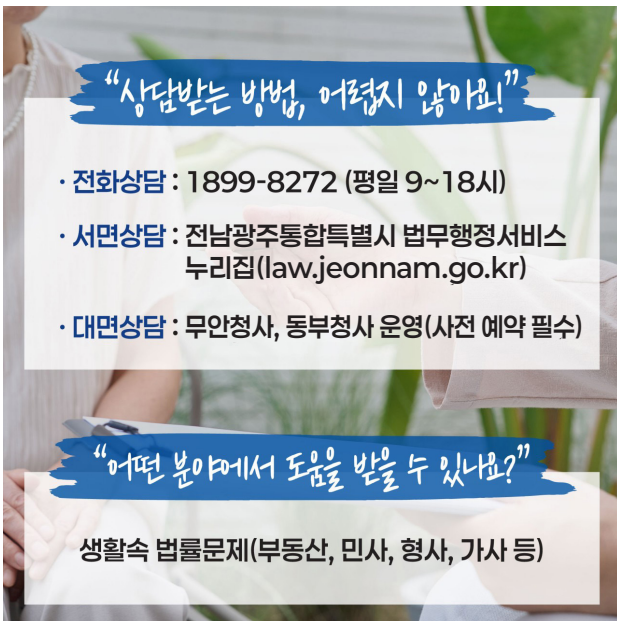


전세사기
학교폭력
보이스피싱
...

“법률문제, 혼자 끔찍 알고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 학교폭력 피해?
보이스피싱 피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로 해결하세요!

“상담받는 방법, 어렵지 않아요!”

- 전화상담 : 1899-8272 (평일 9~18시)
- 서면상담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 (law.jeonnam.go.kr)
- 대면상담 : 무안청사, 동부청사 운영(사전 예약 필수)

“어떤 분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생활속 법률문제(부동산, 민사, 형사, 가사 등)



전남광주통합특별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 법률상담 신청 GO!

주민조례청구 이용 안내



주민조례 발안제도란?

-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이 연서(서명)로 지방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만든 조례안의 발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민조례청구는 제도가 시행된 2000년부터 지난 2024년까지 총 436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별도 법률인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시행 (22년~) 이후 아동돌봄, 안전한 식재료 공급, 청년복지, 노동자 인권, 안전진진 등 청구 주제가 다양해지고 청구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구제외 대상(제4조) 이외에는 어떤 주제든 조례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제외 대상) 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2.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부과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3.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4.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기존의 조례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제나, 행정의 공백을 보완하는 제도의 도입 등 지역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된 내용으로 청구될 경우, 서명 참여를 보다 활발히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청구하나요?

-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 주민(선거권 없는 자 제외) 가운데 대표자를 선정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대표자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기관** : 지방의회(대표전화로 문의)
 - 신청서류**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주민청구조례안
 - 신청방법** :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청구
-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청구인명부에 조례 청구에 필요한 일정 수 이상의 주민 서명(시·군·구별, 읍·면·동별 작성)을 받아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
 - 서명기간** : 지방의회의 의장이 대표자 증명서 발급 후 그 취지 등을 공표한 날부터 시·도 6개월, 시·군·구 3개월 이내
 - 서명방법** : 서면 또는 전자(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 서명

주민조례청구 진행절차



청구서·조례안 제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신청
(대표자→지방의회)



대표자 증명서 교부, 청구취지 등 공표



서명요청, *시·도 6월 이내 / 시·군·구 3월 이내
청구인명부 제출(서명요청 기간 경과 후) *시·도 10월 이내 / 시·군·구 5월 이내



청구인명부 관련 공표, 열람 및 이의신청
*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청구요건 심사, 수리여부 결정 및 통지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종료 후 3개월 이내)



주민청구조례안 발의(의회의장 명의)
* 수리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
* 수리 후 1년 이내 * 본회의 의결로 1년 연장 가능



집행부 이송 및 조례 공포

청구인(대표자) 할 일 **파란색**

지방의회 할 일 **검정색**

전자서명 진행절차

1

PC 또는 모바일로 주민e직접 플랫폼 (juminegov.go.kr)에 접속

2

"서명하기" 클릭(click)

juminegov.go.kr

3

주민조례안 보러가기 클릭(click)

4

해당 지역에 청구된 주민조례안을 찾아 "조례안명"을 누른 후 주민조례안의 청구취지, 주요 내용 등을 확인

5

"온라인서명" 버튼을 눌러 대표자의 서명요청 메시지를 확인

6

온라인서명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후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전자서명을 실시

CONTENTS

I	법무단신	5
II	이달의 새 법령	19
III	새로운 판례	23
IV	법령해석사례	37
V	행정심판 재결사례	47
VI	생활법률 상담사례	57
VII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75
VIII	법나들이	91



법무단신



01

[판결] “50억 자금주 행세 잔고 증명 수수료 4,000만 원 가로채” 징역 4월

자신이 50억 원의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하며 잔고증명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6월 11일 확정했다(2026도3931).

[사실관계]

A 씨는 2019년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주면 나의 자금 50억 원을 4박 5일 동안 예치해 자금증명을 해주겠다”고 말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보유한 자금이 없어 다른 자금주를 통해 50억 원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이 자금주인 것처럼 행세했다.

[하급심 및 대법원 판단]

1심은 A 씨가 처음부터 약속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단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

항소심도 A 씨가 피해자를 속여 4,000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50억 원을 2박 3일간 예치해주겠다고 했을 뿐 4박 5일을 약속하지 않았고, 돈을 가로챌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02

[판결][단독] 개에 얼굴 물린 여성 “보험사, 1억 원 배상”

친척 집을 방문했다가 대형견에 얼굴을 물려 흉터가 남은 20대 여성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 상한인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민사6단독 이하윤 판사는 피해자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2024가단68657)에서 “B 사는 A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 씨는 2020년 7월 강원도 횡성 외숙모 집을 방문했다가, 마당에 묶여 있던 30kg가량의 대형견의 사진을 찍던 중 개에게 얼굴을 물렸다. A 씨는 응급 봉합술을 받은 뒤 안면 흉터 성형술과 지방이식술 등을 받았지만 얼굴에 흉터가 남았다. A씨 외숙모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돼 있었다.

보험사는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고 A 씨가 스스로 개에게 접근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견주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형견은 언제든 난폭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방문객에게 덤비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봤다. 특히 사고 당시 친척 25명이 모여 있었으므로 보호 조치를 할 필요성이 컸던 점, 개가 낯선 사람에게 짓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견주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 씨가 스스로 개에게 다가간 점 등을 고려해 과실을 50%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 얼굴에 남은 흉터에 따른 노동능력 상실도 인정했다. 성형수술을 받더라도 흉터가 남아 일반적인 대화거리에서도 식별될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A씨

가 20대 미혼 여성으로 장래 취업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 판사는 A 씨의 불안·우울장애 등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정했다.

03

[판결] “무기계약직 된 프리랜서 PD, 정직원과 같은 임금 줄 수 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2년 넘게 일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면,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의 임금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채용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보수만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김남현 PD가 춘천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2026다200014)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김 PD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김 PD는 2011년 4월~2022년 2월 약 11년 동안 춘천 MBC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담당했다. 조연출과 코너 연출을 비롯해 촬영·편집 보조, 방송 송출을 위한 마무리 작업 등을 맡았다.

그의 마지막 계약은 2021년 2월 체결한 ‘AD(조연출) 프리랜서 업무계약’이었다. 계약기간은 2021년 3월~2022년 2월이었다. 춘천 MBC는 2022년 1월 김 PD에게 “2월 28일자로 프리랜서 계약이 만료돼 종료된다”는 내용의 안내서를 보냈다.

김 PD는 이름만 프리랜서였을 뿐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였다고 주장했다. 또 2년 넘게 일해 이미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근로자가 됐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내보낼 수 없다며 2022년 소송을 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김 PD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다.

회사가 방송할 프로그램을 정하고 소속 메인 PD가 구체적인 기획을 맡았기 때문에 김 PD가 회사의 기획 의도와 방침에 따라 일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PD가 맡을 프로그램이나 코너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없었다고 봤다.

김 PD는 2011년 이후 다른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고, 수입도 모두 춘천 MBC에서 받은 보수였다. 1심은 이런 점을 종합하면 김 PD가 독립된 프리랜서가 아니라 회사에 종속돼 일한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회사가 보낸 안내서에는 계약이 만료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해고 사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1심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으므로 해고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회사에는 해고 이후 22개월분의 임금 4,603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김 PD가 근로자이고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계약 만료 통지 역시 무효인 해고라고 봤다.

다만 김 PD에게 회사의 일반직이나 업무직 근로자와 같은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MBC는 무기계약 근로자를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해 호봉제를 적용받는 ‘일반직’과, 계약직에서 전환되거나 공개채용돼 연봉제를 적용받는 ‘업무직’으로 나누고 있었다.

항소심은 김 PD가 일반직·업무직 공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직으로 전환된 적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기존 프리랜서 계약에서 정한 주급 43만 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했다. 여기에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등을 더해 회사가 지급할 금액을 6,775만 원으로 정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김 PD와 비슷한 일을 하는 직원이 있는지 확인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에게는 같은 사업장에서 같거나 비슷한 일을 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있을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근로조건이 똑같이 적용된다.
- 김 PD는 연출·조연출과 촬영·편집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를 하다가 2014년 경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됐다.
-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보수규정은 무기계약 근로자를 일반직과 업무직으로 나누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김 PD처럼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가 된 사람을 위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았다.
- 회사는 김 PD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뒤에도 계속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 김 PD와 같은 부서에서 일한 일반직·업무직 직원들의 업무를 비교하면 실제 업무 내용에 큰 차이가 없었다.
- 따라서 김 PD에게 같은 부서에서 비슷한 일을 한 일반직이나 업무직 직원의 취업규칙과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 그런데도 원심은 김 PD와 비슷한 일을 한 일반직·업무직 직원이 있는지 살펴보지 않았다. 김 PD가 공개채용 절차 등을 거치지 않아 일반직이나 업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임금체계를 적용하지 않았다.
- 원심 판단에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 의견]

김남현 PD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저 개인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라, 형식적인 계약이 아니라 실제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준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프리랜서라는 이

유로 차별받는 방송 현장의 많은 노동자들에게도 희망이 되는 판결이 되길 바란다. 환송심에서도 대법원의 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공정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송대리인 정일호(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창세 변호사는 “슬프게도 방송현장에서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란 이름으로 차별이 만연하다. 이제는 함께 방송을 만드는 동료로 인정하고 그분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04

[판결] 수백억 규모 관광단지 투자에도 입국 불허… 법원 “경제적 기여보다 공익”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의 입국 여부는 설령 경제적 기여 가능성이 크더라도 경제적 이해관계가 아닌 공공의 안전 등 공익적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강우찬 수석부장판사)는 5월 28일 외국인 A 씨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등을 상대로 낸 입국불허처분취소소송(2025구합55742)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실관계]

원고 A 씨는 해외에 모회사를 둔 기업과 이 회사의 한국 지사, 부동산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 등의 회장이다. 앞서 A 씨는 숙박·휴양·문화·상가시설을 갖춘 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제주시 소재 86만 230㎡의 토지를 약 338억 원에 매수하기도 했다.

A 씨는 2018년경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던 한국인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 씨가 출입국관리법 제11조가 정한 입국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을 불허했다.

A 씨는 이같은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기소유예 처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고령이라 재범가능성이 낮다는 취지다. 또한 처분이 제주도 관광객 유치라는 공익 측면에서도 불이익이 큼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단(요지)]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 또는 사회질서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 기소유예 처분 이후 다른 범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험성이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 어렵다. A 씨의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이자 선량한 성 풍속을 해치는 행위다. A 씨가 여전히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과거 행위에 대한 인식과 책임수용 측면에서 충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 불법행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기업 총수라는 지위나 경제적 기여 가능성을 주된 이유로 입국을 허용하면 출입국 관리의 공공안전·법질서 유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입국허가가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비치면 제도의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신뢰도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입국불허처분은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아니다.

05

[판결] “부모 장기 간병 대가로 받은 재산, 유류분 산정서 제외”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한 대가로 증여받은 재산은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유류분 산정 대상인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대법원이 재차 확인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당사자가 위헌제청을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므로, 특별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한 개정 민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 씨 등 4명이 형제인 B 씨를 상대로 낸 유류분반환청구소송(2024다222922)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 중 B 씨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6월 11일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실관계]

2020년 11월 사망한 망인에게는 딸 4명과 아들 2명이 있었다. 딸들은 두 아들이 망인으로부터 증여·유증받은 재산 때문에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고 2020년 부동산 지분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아들 B 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도 실질적으로 망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므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인은 과거 딸들에게 아파트 분양대금을 빌려줬다가 이를 돌려받는 대신 다른 아파트의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B 씨는 2003년 6월과 2006년 6월 해당 아파트 2채에 관해 각각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2006년 6월 아파트 한 채를 1억8,100만 원에, 2018년 2월 나머지 한 채를 2억7,300만 원에 처분했다.

B 씨는 아파트 2채를 망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설령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병원비와 간병비를 부담하는 등 망인을 특별히 부양한 데 대한 대가이므로 특별수익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급심 판단]

1심은 딸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아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도 B 씨 명의로 이전된 아파트 2채를 망인의 생전 증여로 봤다. 망인이 딸들에게 빌려준 아파트 분양대금 대신 취득한 아파트의 소유권이 B 씨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B 씨가 망인에게 해당 아파트의 매수대금을 지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1심과 항소심은 현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전인 2022년 6월과 2024년 1월 이뤄졌기 때문에 B 씨가 주장한 장기간의 동거와 간병, 병원비 부담 등이 특별한 부양·기여에 해당하는지, 아파트 증여가 그에 대한 보상인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심리·판단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재판이 계속 중이던 이 사건에는 개정 민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2024년 4월 25일 개정 전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피상속인을 오랫동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재산까지 다른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이후 2026년 3월 개정된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이 상당 기간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증여·유증을 받은 경우, 그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 현재가 개정 전 민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하면서도 일정 시한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은 유류분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를 기여분과 유류분이 단절돼 기여상속인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는 상태를 개선입법 시행 때까지 계속 유지하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개정 전 민법 제1118조 가운데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은 부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적용중지 상태에 있다고 봐야 한다.
- 개선입법의 소급 적용 여부와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와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을 고려하면, 헌법불합치 결정의 당해 사건뿐 아니라 결정 당시 구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도 소급효가 미친다.
- 이들 사건이 개정 민법 부칙의 경과조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구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 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 이 사건은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이었으므로 B 씨가 별도로 위헌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
- 그런데 원심은 구법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아파트 2채를 B 씨의 특별수익으로 보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이달의 새 법령



학대피해 아동의 학습권 보장 및 아동학대 사망사건 분석 체계 강화 (「아동복지법」, 8. 4. 시행)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피해아동 가족의 학습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 먼저,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모두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등에는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방정부의 장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피해아동의 취학을 요청하거나 학교의 장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등이 이에 따르도록 의무화하여 보호자 동의 부재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의심 사망사건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관련자 면담 및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마련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8. 11. 시행)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고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5년 단위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은 반도체산업의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국가 및 지방정부는 반도체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을 조성·지원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우선 지원한다.

고의적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및 현장 단속 실효성 강화 (「저작권법」, 8. 11. 시행)

고의적인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 인정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현장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현장 조사 권한이 대폭 보강된다. 불법복제물이나 무력화기기의 발견·수거·폐기·삭제를 위해 관련 장소에 출입하는 것은 물론, 서류 등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신설되며,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K-콘텐츠 창작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불법 유통을 근절하여 공정한 저작권 생태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및 경제적 제재 강화(「공연법」, 8. 28. 시행)

공연 입장권, 관람권 또는 할인권 등의 부정구매 및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한 입장권 거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앞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재판매 목적의 입장권 구매 행위와 상습 또는 영업으로 구입가격을 초과하는 입장권 판매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 부정판매한 자에 대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 이하에 달하는 강력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암표 부정거래를 신속히 단속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정구매·부정판매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함께 신설되어 운영된다.



새로운 판례



01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이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두3011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차) 상고기각

1.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이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재량행위인지 여부(적극) 및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는 해당 부당이득징수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지(적극),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의 원칙의 의의, 4.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의 ‘사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1. 구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 제1항 제5호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의 하나로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5조는 “법 제2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

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간호사(이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까지 포함하여 ‘의사 등’이라 한다)가 제공하는 용역’을 들고 있다. 한편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및 제87조에 의하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은 의사나 의료법인 등으로 한정되고,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러한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취지 및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 용역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공급의 주체가 되어 의료법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을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두5834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하는 의료보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20. 12. 29. 법률 제17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7조 제1항은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문언상 일부 징수가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다. 위 조항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지급청구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바람직한 급여체계의 유지를 통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는 데 입법 취지가 있으나, 요양기관으로서는 부당이득징수로 인하여 이미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하여 그 비용을 상환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그 침익적 성격이 큰 점 등을 고려하면,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5두39996 판결, 대법원 2020. 7. 9. 선고 2018두44838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앞서 본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의 입

법 취지와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을 고용하여 제공한 의료보건 용역에 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징수처분이 이루어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해당 부당이득징수금이 실제로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징수처분은 당초의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 이후에 별도로 이루어지는 제재처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량에 의해 그 징수금액이 결정될 뿐 아니라, 위 처분 자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부당이득징수금의 납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의료보건 용역 공급 거래’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상실되거나 그 공급금액이 감축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의 귀속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사람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4도9026 판결 등 참조).
4. 구 국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조세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위하여 원칙적으로 국세 부과권의 제척기간을 5년으로 하면서도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에 과세관청으로서는 탈루신고임을 발견하기가 쉽지 아니하여 부과권의 행사를 기대하기가 어려우므로 당해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다른 어떤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함에 그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두7667 판결 참조).

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甲이 의료법인인 원고 명의를 빌려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개설·운영하였는데, 피고가 해당 요양병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원고가 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임

㉕ 원심은, ① 의료법인인 원고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甲에 의해 개설·운영되었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공된 의료보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등이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고, ②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징수처분을 받았을지라도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甲이 상당한 기간 동안 원고의 운영수익 등을 부당하게 유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소득, 수익, 재산, 거래 등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甲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④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무신고에 따른 7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다만 법인세에 관하여는, 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았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음)

㉖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02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글에 댓글을 작성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3934 모욕 (나) 파기환송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이 나쁘는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 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어떠한 표현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이거나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면서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이나 욕설이 사용된 경우 등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으로 볼 수 없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등 참조).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일시적인 감정의 표출에 해당하는 표현은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적대적·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중의 언어생활이란 측면에서 사회 내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른 자체 평가 및 통제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는 것으로 규율할 수 있는 영역이 적지 않으므로,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어 최후적·보충적 규제수단인 국가형벌권 행사를 통해 개입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보더라도 그러하다(대법원 2026. 5. 29. 선고 2023도14750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 게시판의 피해자와 관련하여 작성된 게시글에 ‘h 쓰레기인 듯...’, ‘h가 쓰레기임’이라는 내용의 댓글(이하 ‘이 사건 각 댓글’)을 작성하여 모욕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작성한 이 사건 각 댓글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각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카페의 특성과, 이 사건 각 댓글이 달린 게시글의 내용, 피고인이 위 댓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위 게시글과 댓글의 전체적인 맥락과 표현 방법 및 의미와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댓글은 인터넷 카페에서 피해자와 A 사이의 대립과 관련해 인터넷 카페 회원들 사이에 게시글과 댓글을 통해 여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개인적인 부정적 감정을 나타내면서 한 단발적인 욕설적 표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상하게 할 만한 표현으로 보일 뿐,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03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방문한 피해아동이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원장의 업무상과실치상 죄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6도1036 업무상과실치상 (다) 파기환송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적극), 2.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구 영유아보육법(2023. 8. 8. 법률 제196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는 제2호에서 ‘보육’을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로 정의하고, 제5호에서 ‘보육교직원’을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구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3조 제1항, 제2항).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고(제18조 제1항), 보육교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제18조의2 제2항).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종합하면,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보육 등 어린이집 업무를 총괄하는 보육교직원으로서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

지는 어린이집이 그 영유아에 대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영유아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는 영유아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은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어린이집에 방문한 피해아동이 상담 중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아동을 원장실에서 데리고 나온 후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채 보호자와의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음. 피해아동은 별다른 제지 없이 어린이집 내부를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음.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아동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① 피고인에게 어린이집 입소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피해아동에 대해서까지 보육교사를 미리 지정·배치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고, ② 이 사건 사고는 뜨거운 냄비를 조리실 바닥에 둔 이 사건 어린이집 조리사와 조리실 문을 잠그지 않은 보육교사의 행위가 직접적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으므로, 설령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실시하면서,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아동이 아직 이 사건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어린이집 입소를 위해 보호자와 함께 방문한 피해아동을 보호자에게서 분리하여 인계받음으로써 적어도 그 어린이집의 보육 영역 안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의무를 적극적으로·실질적으로 인수하였으므로, 이를 통해 피해아동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피해아동의 나이와 발육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으로서 1세에 불과한 피해아동을 어린이집 거실로 내보낼 당시 특정 보육교사 등을 지정·배치하는 등으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관찰이 현실적·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업무상 주

의의무를 위반하였고, ②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그와 관련하여 조리사와 보육교사의 업무상 과실이 경합하였다고 하여 피고인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04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조합원 명부를 받아 조합 규정 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 선거사무원에게 교부한 것이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7. 16. 선고 중요판결]

2024도1785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아) 파기환송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의 의미(=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 및 그 법리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적극), 2. 같은 법 제19조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의 의미(=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 3.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1.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9조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71조 제2호는 제19조를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의 범위를 넘어 그 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개인

정보처리자의 업무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과 구별된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도14713 판결 참조). 이는 같은 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구 「개인정보 보호법」은 제15조, 제16조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19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수범자로 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법령의 체계와 문언을 종합해 보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은 같은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제3항, 제18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이 있는 목적’을 의미하고, 그와 무관하게 제공받은 자가 가지는 주관적·일방적인 목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이 이전된다면, 해당 개인정보는 그 제공의 이유나 의도에 부합하도록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도8339 판결 참조).
3.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2호, 제19조 위반죄의 성립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이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의 최초 수집 목적과 정보주체가 동의한 제3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의 범위, 개인정보처리자가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규정의 내용,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의사표시의 구체적인 내용,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개인정보처리자 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관련 지침이나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목적’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이용행위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와의 일부 약정이나 이들의 내부 규정 등에 위배된다는 사정만으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에서 말하는 ‘목적 외 용도’의 이용으로 쉽사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임원 선거 조합장 후보로 등록한 피고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다음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인 부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

☞ 원심은,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인 명부 중 일부를 제공한 것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인의 선거사무원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피고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해 내부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한 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개인정보를 전달한 것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9조의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 또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기 위하여 제출한 ‘문서 열람·복사 신청서’의 용도 및 목적 란에 ‘선거운동’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달리 구체적인 기재는 없고, 조합의 규정도 “확정된 선거인 명부를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후보자는 이를 ‘선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고만 규정할 뿐이고, 그밖에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의 제공 및 이용 목적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은 점, 조합의 선거관리규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인 선거인 명부를 제공한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인 조합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선거인 명부를 제공받은 후보자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무원과 함께 선거인 명부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 명부를 전달한 행위만으로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법령해석 사례



1

사례

경상북도 울진군 - 산지에서 쇠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쇠석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등 관련)

1.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르면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서는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으로 토석채취에 필요한 장비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갖추도록(제5호)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공작물의 설치(제1호), 토석의 채취(제3호)를 개발행위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에서의 토석의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의 산지를 전제함.)에서 쇠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자가 골재생산에 필요한 쇠석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이유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서는 공작물의 설치를 「건축법」 제2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의 설치로 규정하고 있는바, 골재생산을 위한 쇄석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한다면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및 같은 영 별표 8의2 제2호에 따라 쇄골 채용 석재의 굴취·채취를 위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림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 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같은 영 제19조제2항 및 별표 1 제3호가)에서는 산림골재채취업 등록기준으로 ‘쇄석시설 1식(각주: 쇄석시설 1식에는 쇄석기·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포함되어야 함(「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제2호마목 참조)) 이상’을 규정하고 있는바, 쇄석시설은 석재를 부수고 크기별로 분류하는 쇄석기, 선별기 및 동력설비가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토석채취 부지에 고정되는 인공 시설물에 해당하고, 그 쇄석시설의 설치는 단순히 기계나 장비를 토석채취 부지에 반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장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개발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 그 행위 중 어느 하나를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중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산림에서의 토지 형질 변경(제1항제2호) 및 토석 채취(제1항제3호)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하면서도, 공작물의 설치(제1항제1호)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토석의 채취와는 별개의 개발행위로 보아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각주: 법제처 2010. 10. 11. 회신 10-0295 해석례 참조) 합니다.

또한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서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도록 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에서 보전관리지역 등 내의 산림에서의 토석 채취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도록 한 것은, 보전관리지역 등 내의 산림에서 이

루어지는 토석 채취에 대해서는 산림행정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규정을 따르도록 일원화한 것인데, 이를 넘어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까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대상으로 일원화하려는 취지라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골재생산을 위한 쇄석시설 설치’가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았다고 하여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골재생산을 위한 쇄석시설의 설치에 토석채취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시설이므로 그 설치 행위도 토석채취허가에 일체로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제2호에서 쇄골재용 석재를 채취하려는 경우 쇄석시설 등의 시설·장비 요건을 규정한 것은 토석채취허가 신청인의 자격·능력 요건일 뿐, 특정 산지에서 쇄석시설과 같은 ‘공작물의 설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아니므로, 토석채취 및 쇄석시설 설치 행위를 일괄하여 토석채취허가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와 별도로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례 2

서울특별시교육청 -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환경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 교육감은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일정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서 절대보호구역이나 상대보호구역으로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 본문에 따르면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나, 같은 조 단서 및 제18호에서는 상대보호구역에서 교육감 등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 “「담배사업법」에 의한 지정소매인, 그 밖에 담배(각주: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판매하는 자가 설치하는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는바,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하 “무인판매점”이라 함)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각주: 영업점 내에 상주하는 직원이 없거나 특정 시간에만 출입하는 형태로 무인(無人)으로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전자담배를 인출하는 자동판매기계를 설치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진열대 등을 통해 전자담배를 진열 또는 비치하고 소비자가 상품을 선택하여 무인결제기계를 통해 결제하는 형태로 판매하는 무인판매점인 경우를 전제함.)을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2. 회답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이유

법령에서 용어의 의미를 별도로 정의하거나 의미와 내용을 제한·확대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등 그 용어의 의미가 불명확한 경우, 그 의미는 법령의 규정 내용과 입법 취지는 물론 입법 취지가 유사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충될 수 있는 것인데(각주: 법제처 2014. 10. 10. 회신 14-0572 해석례 참조), 교육환경법에서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고, 상대보호구역에서 학습과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의 하나로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인바, ‘담배자동판매기’의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규정 내용과 입법취지,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먼저 ‘자동판매기’란 일반적으로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상품을 자동적으로 파는 장치”(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를 의미하므로, 그 핵심은 상품의 판매가 판매자의 개입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고 할 것인데, 무인판매점은 일정한 점포 공간에 진열 또는 비치된 상품을 판매원의 개입 없이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하고, 그 결제 또한 판매원이 아닌 소비자가 무인결제기계라는 기계장치를 통하여 하는 것이어서, 상품의 선택·결제·구입에 이르는 거래 과정에서 판매자가 관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통적 의미의 자동판매기와 그 본질이 같습니다.

나아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규제하는 취지는 담배 판매 과정에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고(각주: 「청소년 보호법」 제28조제1항 및 제4항 등 참조) 청소년에게 판매를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청소년의 담배 접근이 용이해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규제의 본질에 비추어 보면 ‘판매자의 부존재’는 담배자동판매기의 결정적 표지라 할 수 있는데, 상품이 기계로부터 직접 인출되는지 아니면 소비자가 진열 또는 비치된 상품을 직접 선택한 후 무인결제기로 결제하는지는 상품 인출의 방식 차이일 뿐 그 표지를 좌우하는 요소라 보기 어려우므로, 상품이 자동으로 인출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을 ‘담배자동판매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법의 입법 취지 및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14일 법률 제 21009호로 교육환경법이 일부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9조제18호에서 ‘담배’의 범위에 ‘연초나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여 니코틴을 이용한 전자담배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는데, 같은 법의 개정이유에서는 합성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액상형 전자담배 무인판매점이 운영되는 문제가 있고, 무인판매점은 신분증 확인 등이 어려워 학생들이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학생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액상형 전자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을 금지하려는 것임을 명시(각주: 2025. 8. 14. 법률 제21009호로 일부개정된 교육환경법 개정이유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환경법에서 무인판매점을 담배자동판매기의 한 형태로 전제하고 양자를 같은 규율 대상으로 보아 규제하려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인바,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의 ‘담배자동판매기’에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이러한 입법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또한 자동판매기를 통한 담배판매는 구입자가 누구인지 분별하는 것이 곤란하고 그 특성상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 비노출성으로 인하여 청소년으로 하여금 심리적으로 담배구입을 용이하게 하여 청소년에 대한 흡연유발효과도 매우 큰데(각주: 헌법재판소 1995. 4. 20. 결정 92헌마264 결정례 참조), 무인판매점 또한 판매자와 대면하지 않는 익명성·비노출성을 가졌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공익적 필요성은 전통적인 자동판매기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무인판매점에서 무인결제기계를 사용하여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교육환경법 제9조제18호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로 보아 상대보호구역에 무인판매점 설치 시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3 사례

민원인 -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캐노피의 끝부분까지 거리를 띄워야 하는지(「건축법」 제58조 등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법」 제58조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2 및 별표 2에서는 같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각주: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을 말하며(「건축법」 제46조제1항 참조), 이하 같음)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바,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돌출된 캐노피(각주: 돌출형캐노피는 건축물에 부속되어 고정된 시설물로서 길이 등이 변동되지 않는 것을 전제함)(이하 “돌출형캐노피”라고 함)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인지 아니면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된 건축물의 외벽(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처마, 차양, 부연(附椽),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미터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산정하기 위하여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같은 목 1)부터 7)까지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 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인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건축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3. 이유

법령에서의 정의 규정은 그 법령에서 쓰고 있는 중요한 용어 등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의문점을 없애기 위하여 두는 것으로서(각주: 법제처 2016. 3. 29. 회신 16-0016 해석례 참조), 총칙에서 규정된 정의 규정은 그와 달리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한 그 법령의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각주: 법제처 2016. 7. 21. 회신 16-0162 해석례 참조).

그런데 「건축법」 제2조제2호에서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이격 거리의 기준인 ‘건축물의 각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해당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는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건축물의 정의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에 딸린 시설물인 돌출형캐노피도 포함되고, 돌출형캐노피가 건축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상 그 외곽의 돌출된 끝부분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말하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 제58조에서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여 대지 안의 공지를 확보하도록 한 취지는 대지 내 채광 및 통풍을 원활하게 하고 개방감을 확보하여 쾌적한 도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피난 및 소화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지를 확보해 건축물의 안전을 향상시키며 도로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각주: 법제처 2022. 6. 10. 회신 법제처 21-0917 해석례 및 2005. 4. 27. 의안번호 제17123호로 발의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정부발의안(대안반영폐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검토보고서 참조)인 점을 고려하면, 대지 안의 공지에서 띄워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건축선 등과 건축물 사이에 실질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바, 건축물 외벽에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까지의 거리를 띄워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편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에서는 처마, 차양 등이 외벽 중심선

으로부터 1미터 이상 돌출된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건축면적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안의 경우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더라도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돌출형캐노피의 일정 부분을 제외하고 이격 거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는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건축법령에서 필요한 각종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한 것으로, 건축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건축물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 건축물의 생김새와는 달리 기술적으로 일정한 부분을 제외하도록 한 것이므로, 쾌적한 도시·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한 같은 법 제58조와는 규정의 목적·취지 등이 다르다는 점, 대지 안의 공지 제도는 피난·소화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등의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건축물에서 돌출된 부분을 무시하고 건축면적을 기준으로 이격 거리를 산정하게 되면 그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로서 돌출형캐노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법」 제 58조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건축물의 부분은 돌출형캐노피의 끝부분입니다.



행정심판 재결사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효력발생일 변경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 효력발생일 변경청구

사건번호 2025-18908

재결일자 2026-02-10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의 효력발생일을 형 확정일인 2025. 4. 29.로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2025. 11. 10.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처분(취소일자: 2025. 12. 1.,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 가. 청구인은 자격취소일을 형이 확정된 2025. 4. 9.로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등 「행정절차법」 제27조 및 제27조의2를 위반하였다.
- 나. 청구인은 형이 2025. 4. 29. 확정되어 그 날부터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할 수 없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2025. 12. 1.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바, 이로 인해 청구인이 사회복지사 자격 재교부에 소요되는 기간이 2년에서 2년 7개월로 늘어나 청구인에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자격취소일은 2025. 12. 1.에서 2025. 4. 29.로 변경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절차법 제27조, 제27조의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형사재판확정증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4. 7. 17. □□법원으로부터 ‘(생략)’의 죄명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형은 2025. 4. 29. 확정되었다.

나. 피청구인은 2025. 8. 6.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5. 8. 13.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하였다.

- 다 음 -

○ 형 집행일 기준으로 직무자격이 정지되었으므로 2025. 4. 29.부터 취소처분을 받기를 희망함

다. 피청구인은 2025. 11. 1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처분의 내용: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자격취소일: 2025. 12. 1.)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 등으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음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 제11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1항

5. 이 사건 처분의 무효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 1)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2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제2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제2의2호) 등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고, 같은 법 제11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1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2호), 자격증을 대여·양도 또는 위조·변조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게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자격증을 재교부하지 못한다.

나. 판단

먼저,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관계법령에 따르면, 처분의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처분청은 그 의견에 반드시 반영하여 처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 7. 17. □□법원에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2025. 4. 29. 확정된바, 이는 사회복지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점, 이 경우 피청구인은 위 관계법령에 따라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 점, 수사기관이 아닌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사회복지사 결격사유 발생 시점을 즉시 확인할 수 없는 점, 사회복지사는 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이 취소될 때까지는 사회복지사

관련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점, 사회복지사 자격취소일을 그 결격사유 발생일로 소급하여 자격취소 처분을 한다면 결격사유 발생일부터 취소 처분일 사이의 기간 동안 사회복지사가 행한 모든 사무가 무자격자에 의한 행위가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사회복지사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한 후, 위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7771

재결일자 2026-01-27

재결결과 기각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5. 8. 25. 신청인에게 한 6개월간(2025. 11. 27.부터 2026. 5. 26.까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도 ○○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며 내원일수 거짓청구의 부당한 방법으로 7억 1,318만 6,8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25. 8. 25. 청구인에게 6개월간(2025. 11. 27.부터 2026. 5. 26.까지)의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였다고 하나, 이는 신빙성이 부족한 사실확인서만을 근거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3. 관계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제98조, 제100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4. 9. 26. 다음과 같은 부당금액 및 행정처분 산출내역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10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부당금액 산출내역 : 716,672,160원
- 부당금액 세부산출 내역
 - 내원일수 거짓청구: 713,186,890원- 실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내원하여 진료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진찰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3,486,107원 (생략)

나.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2025. 6. 2.자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2025. 8.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공표 사항
 - :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종류, 대표자 성명, 대표자 면허번호, 위반행위, 처분내용,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법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 공표의 원인이 되는 사실-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금액 : 7억 1,318만 6,890원
 - ※ 공표원인이 되는 거짓청구내역은 2024. 9. 26.자 행정처분서상의 내원일수 거짓청구 내역임
- 의견제출 기한: 2025. 6. 27.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법 제98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제1호),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르면, 법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해당 요양기관의 종류와 그 요양기관 대표자의 면허번호·성별(제1호),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제2호),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을 위하여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3호)’을 말한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내원일수 거짓청구의 부당한 방법으로 7억 1,318만 6,890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107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행정처분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되기 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뿐만 아니라 취소권한이 없는 다른 행정청도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데, 동 업무정지처분이 처분청이나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청구인의 내원일수 거짓청구 금액(7억 1,318만 6,890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위반사실

의 공표 대상 요건(1,500만원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 ③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요양급여비용의 부담청구는 국민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서 이를 방지하여 환자들의 보험수급권을 보장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크다는 점, ④ 그 밖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사실관계를 오인하였다거나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생활법률 상담사례



01

게임사이트 게시판에 저를 비방하는 욕설글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게임사이트 운영자에게 욕설글을 삭제하도록 요청하세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 등에 욕설을 한 것은 사이버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이버 경찰청에 고소를 해서 「형법」에 따라 처벌을 할 수 있어요.

● 사이버 모욕죄란?

“사이버 모욕죄”는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많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경멸적 감정을 담아 기재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예요.

● 사이버 모욕죄의 처벌규정

사이버 모욕죄는 주로 많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상대방에게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사이버 스토킹의 성립요건

욕설 등을 하는 행위가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메일을 보내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불안감을 느끼도록 했다면 이는 사이버 스토킹으로 볼 수 있고, 스토킹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02

집행유예 기록도 신원조회에 나오나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그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에 대한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작성되어 수형인의 본적지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송부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그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 또는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일반사면을 받거나 복권이 된 경우에는 수형인명표(전과기록)가 폐기됩니다.

● 형의 실효

-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7년을 경과한 때에는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그 재판의 실효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가 삭제·폐기됩니다.

- 수형인(受刑人)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다음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그 형은 실효됩니다.

①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 10년

② 3년 이하의 징역·금고: 5년

③ 벌금: 2년

- 구류(拘留)와 과료(科料)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됩니다

● 형의 실효의 효과

- 형이 실효되면 전과기록(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은 모두 삭제됩니다.
- 그러나 수사과정상 작성되는 수사자료표는 폐기되지 않습니다.
- 수사자료표는 범죄수사, 재판, 병역의무의 부과 등과 같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03

현재 아이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싶습니다. 법률상 보장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근로자가 임신 중 건강 보호, 자녀의 양육 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해 일정 기간 근무 시간을 줄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임신·육아기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육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다음의 조건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제74조 제7항·제8항,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22조의3 및 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1면 참조).

구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사유	임신	육아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대상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근로자 (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	위 신청사유에 해당하는 근로자
단축시간	1일 2시간(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1일 근로시간 6시간으로 함)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단축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유산, 조산 위험이 있는 근로자는 임신 전 기간)	1년(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 시 최대 3년)	최초 1년(1회 연장 포함 최대 3년, 학업 사유 제외)
임금 지급	임금 삭감 없음	근로시간 비례임금 이상 지급	

※ 현재 신·재생에너지 설비 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https://www.knrec.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4

법정 임신기가 지나면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닙니다.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았거나 사용자가 허용한 경우 법정 임신기(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가 지나더라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예외 적용

임신기간 중에 유산, 조산 위험 등 고위험 임신 진단을 받았다면, 임신 주수와 상관 없이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본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2조의3).

법정 임신기(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와 관계없이 임신을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용자는 ‘위라벨일자리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제3호가목(4) 및 (5)참조].

1.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임금액 이상을 지급할 것
2.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가 2주 이상 연속해서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할 것(다만, 단축 후의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날이 있는 달은 해당 월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예외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또한 법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1년 이내,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 시 최대 3년)을 초과하여 사업주의 재량으로 추가적인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 균형을 위한 유연근무 활용 매뉴얼』, 126면 참조).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통해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ww.worklife.kr>)-사업주 지원 10시출근&노동시간단축 참조).

05

출근길에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한 뒤 길가에 세워두곤 하는데,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 근처에 주차해도 괜찮을까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정차 또는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공유 킥보드 거치대나 주차 허용 구역에 주차해야 합니다.

● 정차 및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

-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32조 본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의3제1항).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함)
 -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인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 다음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스프링클러설비등·물분무등 소화설비의 송수구
 - 소화용수설비
 - 연결송수관설비·연결살수설비·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 및 무선통신보조설비의 무선기기접속단자
 -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시장이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 정차·주차 금지 사항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29호).

●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 또는 주차하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다음의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시간 등을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 도로에서 정차할 때에는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할 것(다만,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함)
- 도로에서 주차할 때에는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는 주차의 장소·시간 및 방법에 따를 것

■ 정차·주차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제31호).

06

키즈카페에서 놀다가 혹시 아이가 다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키즈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기타유원시설업 보험가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기타유원시설업 신고를 한 키즈카페 사업자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관광진흥법」 제9조).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키즈카페 사업자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등록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광진흥법」 제35조제1항제4호 참조).

● 사고배상보험 가입

- 키즈카페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1항).
- ※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
- 위에 따른 보험은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1조제2항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제1호).

※ 키즈카페의 보험 등록 등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www.cp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키즈카페 관리주체가 이를 위반하여 사고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5호).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 키즈카페 사업자는 키즈카페의 화재(폭발을 포함)로 인하여 이용자가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제1항 참조).
- 이를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1항제6호의2).

07

키즈카페에서 제공하는 음식은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직접 조리하는 음식과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위생관리나 허가 절차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키즈카페 내에서 식음료를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완제품 음료, 과자 등을 판매하거나 컵라면 등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식품접객업 신고

■ 키즈카페에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의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려는 사람은 해당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제25조제1항제8호 참조).

※ 단순히 음료, 과자 등의 완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와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주는 경우에는 식품접객업 영업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출처: 행정안전부, 『2023년 키즈카페 안전관리 지침』, 11쪽).

● 신고 시 제출 서류

■ 위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의 영업만 해당)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기재된 서류(2대 이상의 식품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일련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일괄 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
- 영업장과 연결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정기 시설검사합격증(「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위반 시 제재

- 식품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또한 식품판매업으로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 또는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9조제1항)
 - 해당 영업소의 간판 등 영업 표지물의 제거나 삭제
 - 해당 영업소가 적법한 영업소가 아님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 해당 영업소의 시설물과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 또는 게시문을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9호).

08

3천 석 규모의 공연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화막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하나요?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은 내화소재를 사용해야 하고,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춰야 합니다.

● 방화막 설치 의무

- “방화막”이란 화재로 인한 화염 및 연기의 관람석 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는 내화성의 막을 말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참조).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 무대에 방화막을 설치해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본문).

● 방화막 성능기준

- 공연장에 설치해야 하는 방화막의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1항).
 - 내화소재를 사용할 것
 - 연기가 새어나가지 않는 구조일 것
 - 화재 발생 시 작동하여 객석과 무대를 분리하는 기능을 갖출 것
 - 「공연장 무대시설 안전진단 시행세칙」 별표 2 제21호에 따른 방화막 설계검토 기준에 부합할 것

●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장은 방화막 설치의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연법」 제11조의7제1항 단서 및 「공연법 시행령」 제9조의7제1항).
 1. 좌석 수가 1천 석 미만인 공연장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공연장
 - 액자 모양의 건축 구조물(프로시니엄)을 설치하여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구

조가 아닌 공연

- 방화막 작동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공연장
- 방화막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을 충족 하지 못하게 되는 공연장
- 위 2.에 따른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방화막 설치 제외대상 공연장 인정신청서에 공연안전지원센터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6제2항).

● 위반 시 제재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공연장 운영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제33조제1항제5호의3).
- 공연장에 방화막을 설치하지 않은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1항제3호).

09

공연장을 운영 중입니다. 공연장 내에 설치된 소방시설이 잘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관리업자나 기술자격자에게 점검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공연장운영자는 소방시설이 적합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화펌프 고장 등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공연장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비상구(非常口), 방화문 및 자동 방화셔터(이하 “소방시설등”이라 함)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적합하게 설치·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22조제1항 전단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자체점검의 종류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
 - 작동점검: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종합점검: 소방시설등의 작동점검을 포함하여 소방시설등의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과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소방시설등 종합점검표에 따라 점검하는 것

● 자체점검의 횟수 및 시기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은 모두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종합점검의 경우 특급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제3호).

■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의 점검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및 별표 3 제2호·제3호).

- 작동점검: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최초점검은 제외)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 종합점검: 공연장의 소방시설등이 신설된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 그 밖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

● 중대위반사항 발견 시 조치

■ 공연장운영자는 자체점검 결과 다음의 중대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 소화펌프(가압송수장치를 포함), 동력·감시 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비상전원을 포함)의 고장으로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
- 화재 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 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 소화배관 등이 폐쇄·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소방시설등에 대해 스스로 점검을 하지 않거나 관리업자 또는 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호).

■ 중대위반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4호).

10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공연장을 운영 중이다 보니 피난안내도를 비치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않아도 되며, 그 대신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

● 피난안내 조치 의무

- 공연장운영자는 화재 등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 발생 시 관람자가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을 공연 시작 전 관람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공연법」 제11조의5제1항 참조).

● 피난안내도의 비치

- 피난안내도는 공연장 출입구 부분으로서 관람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비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연장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어 비상시 관람객이 바로 대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가목·나목).

● 피난안내도에 포함돼야 할 내용

- 피난안내도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1호다목).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하강기·피난사다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소방시설(소화기·소화전·휴대용 비상조명등 등)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 피난안내도의 위치(현재 위치 표시)

- 비상시 엘리베이터 사용금지 내용 등 피난 및 대처 방법

● 피난의 안내

- 피난안내는 공연장의 상황에 따라 안내방송 또는 영상물 방영 등의 방법으로 하며, 관람객이 공연장 입장을 완료한 후 매 회 공연 시작 전까지 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 피난안내를 할 때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공연법 시행규칙」 제6조의4 및 별표 1 제2호다목).
 - 비상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 구획된 실(室) 등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 공연의 특수상황(화염, 연기를 사용한 연출 등)에 대한 사전 안내
 - 장애인·노인·아동의 피난 시 도움 요청 방법
 - 그 밖에 피난 및 대처 방법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알아야 할 사항

● 위반 시 제재

-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키는 것 중 어느 하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연법」 제43조제4항제1호).



외국어 생활법령정보



금융거래

▶ 은행 계좌 개설(통장 만들기)

• 계좌 개설

- 외국인은 다양한 금융 목적을 위해 외화 또는 원화를 예치할 수 있는 예금계좌 또는 금전신탁계좌를 국내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6-2조 제1항).

• 필요 서류

- 계좌를 개설할 때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서류 요건은 은행이나 계좌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은행 지점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외국인의 은행계좌 개설 안내』).

구분	종류
신분 확인	외국인등록증(거소증), 여권, 본국 국민 신분증 등
금융거래 목적 증빙서류 ※ 미제출 시 출금 및 이체가 제한된 거래계좌만 개설 가능	(급여 입금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직장가입자), 소득금액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시간제 급여 입금의 경우)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사업자금의 경우) 사업 관련 거래계약서, 거래처로부터 받은 급여명세서 등 (그 밖의 목적의 경우) 신고한 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서류
조세조약에 따른 금융정보 보고 관련 서류	(한국 거주자로 등록된 경우) 외국인등록증(거소증), 거주자증명서, 국내거소신고증, 183일 이상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출입국 기록 등) (신원확인서상 외국인 거주자로 등록된 경우) ※ 해외 납세자 번호, 해외 주소, 국제 연락처(필수) 계좌 명의인의 거주지국 정부가 발급한 거주자증명서

• 계좌 개설 방법

- 은행에 따라 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해외송금

• 외국환은행 지정

- 해외송금을 위해 외국인은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10-11조제1항제3호, 제4-4조제1항제3호 및 제4-4조제2항).

해외송금을 위한 외국환은행 지정 대상

-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
- 한국에서 지급받는 사회보험, 급여 및 연금
- 연간 미화 5만 달러 이내의 자금

• 해외송금 한도

- 외국인은 지정된 외국환은행을 통해 연간 미화 5만 달러까지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송금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2항).
- 다만, 연간 미화 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만 송금이 가능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7호).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해외송금

- 해외에서 반입하거나 송금받은 대외지급수단의 범위 내(비거주자 외국인의 경우, 가장 최근 입국 이후 반입하거나 송금받은 대외지급수단에 한함)
-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에게 대외지급수단 거래로 신고한 범위 내
- 한국에서의 근로소득 또는 프리랜서 소득
- 한국에서 지급받는 사회보험, 급여 및 연금
- 「외국환거래규정」 제7장(자본거래) 또는 제9장(직접투자 및 부동산 취득)에 따라 해외지급이 인정되는 자금

(증빙서류 예시) 외국환매입증명서, 대외지급수단 거래 영수증, 급여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보험금 지급 영수증 등

※ “대외지급수단”의 정의

- “대외지급수단”이란 외국통화,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또는 표시통화와 관계없이 해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을 말합니다(「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

- 국세청 및 관세청 보고

- 1회 송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4-8조제1항제3호 및 제4-8조제2항제5호).

➡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교

- 신용카드는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대금을 정산하는 방식이며, 체크카드는 결제 즉시 연결된 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는 방식입니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금융감독원 - 금융소비자보호 - 금융생활 가이드 - 신용카드 가이드).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발급 기관	신용카드사	신용카드사
이용 한도	신용한도 이내	계좌 잔액 이내
결제	매월 정해진 결제일에 일괄 결제	구매 시 즉시 결제
할부 및 현금서비스	이용 가능	이용 불가
교통카드 기능	이용 가능	이용 가능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발급

-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자의 체류자격, 재직 여부, 자산, 국내 금융거래 이력 등이 심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은행이나 카드사에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64쪽).
- 체크카드는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 시 통장과 함께 발급됩니다(『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 63쪽).

➡ 환전

- 원화를 외화로 환전

- 미화 1만 달러 상당액까지는 증빙서류 제출 없이 환전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6-2조제3항).

구분	요건
미화 1만 달러 이하	증빙서류 불필요
미화 1만 달러 초과	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필요

- 미화 1만 달러 이하 환전 시 서류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외국환은행이 여권에 환전 내역을 기록해야 하므로 여권을 지참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 2-3조제2항 본문).

- 다만, 100만원 이하의 환전의 경우에는 여권 없이도 환전할 수 있습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3조제2항 단서).

- 외화를 원화로 환전

- 미화 2만 달러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화의 출처를 증명하는 서류(외국환 매입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1항제1호).

- 국세청 및 관세청 보고

- 1회 환전 금액이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국세청 및 관세청에 통보됩니다(「외국환거래규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5항).

※ 외국인을 위한 금융거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금융감독원 e-금융교육센터(<https://www.fss.or.kr/edu>)에서 8개 언어로 제공되는 『외국인을 위한 금융생활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많은 은행이 주말 운영 및 다국어 상담이 가능한 외국인 전용 특화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며, 언어별 콜센터 및 बैंकिंग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inancial Transactions

➡ Opening a bank account (creating a passbook)

- Opening a bank account
 - Foreign nationals are allowed to open deposit accounts or money trust accounts in Korea to deposit foreign currency or Korean won for various financial purposes (Article 2-6-2(1)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Required documents
 - The following documents may be required to open an account. Specific document requirements may vary depending on the bank or type of account, so it is advised to check with each bank branch or website (「Guidelines for Bank Account Opening by Foreign Nationals」).

Category	Type
Identification	Alien registration card (residence card), passport, national ID from home country, etc.
Proof of purpose of financial transaction ※ If not submitted, only a transaction account with limited withdrawals and transfers may be opened.	(For salary deposit) Certificate of employment, receipt for wage and salary income tax withholding, certificate of health insurance qualification (for employee insured), proof of income statement, employment agreement, etc. (For part-time wage deposit) Copy of employer's business registration, employment agreement, payslip, etc. (For business funding) Business-related transaction contracts, payslips from clients, etc. (For other purposes) Objective documents with the capacity to confirm the stated purpose of the transaction
Documents for reporting financial information under tax treaties	(If listed as a resident of Korea) Alien registration card (residence card), certificate of residence, domestic resident card, documents proving stay of at least 183 days (e.g., immigration records), etc. (If listed as a foreign resident on ID verification form) ※ Foreign taxpayer ID, overseas address, and international contact number (required) Certificate of residence issued by the government of the account holder's jurisdiction of residence

- Method of opening an account
 - You may open an account by visiting a bank branch or via mobile app depending on the bank.

➡ Overseas remittance

- Designating a foreign exchange bank
 - For overseas remittance, foreign nationals must designate a foreign exchange bank falling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Subparagraph 3 of Article 10-11(1), Subparagraph 3 of Article 4-4(1) and Article 4-4(2)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Designation of Foreign Exchange Bank for Overseas Remittance

- Income from employment or freelance work in Korea
-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pensions paid from Korea
- Funds up to USD 50,000 per year

- Overseas remittance limits
 - Foreign nationals may remit up to USD 50,000 per year through their designated foreign exchange bank without submitting any supporting documents (Article 4-4(2)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However, if the amount exceeds USD 50,000 per year or falls under the following categories, remittance is allowed only with submission of documents proving the source of funds (Subparagraphs 1, 2, 3, and 7 of Article 4-4(1)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Overseas Remittance Requiring Supporting Documents

- Within the scope of foreign means of payment brought in or wired from abroad. For foreign non-residents, this applies only to foreign means of payment brought in or wired after the most recent entry.
- Within the scope reported to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as foreign means of payment transactions pursuant to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Income from employment or freelance work in Korea
- Social insurance, benefits, and pensions received from Korea
- Funds recognized for overseas payment under Chapter 7 (Capital Transactions) or Chapter 9 (Direct Investment and Real Estate Acquisition)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Examples of supporting documents) Certificate of foreign exchange purchase, foreign means of payment transaction receipt, payslip, income statement, insurance payment receipt, etc.

※ Definition of “foreign means of payment”

- “Foreign means of payment” refer to foreign currency, payment instruments denominated in foreign currency, or any payment means usable abroad regardless of denomination (Subparagraph 4 of Article 3(1)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Act」).

- Report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Korea Customs Service
 - If the remittance exceeds USD 10,000 per transaction, it will be report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Korea Customs Service (Subparagraph 3 of Article 4-8(1) and Subparagraph 5 of Article 4-8(2)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Issuance of credit and debit cards

- Comparison of credit and debit cards
 - A credit card allows payment first and settlement later, while a debit card deducts the payment amount immediately from the linked bank account. The differences are outlined below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 Financial Life Guide - Credit Card Guide).

Category	Credit Card	Debit Card
Accepting merchants	Credit card merchants	Credit card merchants
Issuing entity	Credit card companies	Credit card companies
Credit limit	Within credit limit	Within account balance
Payment	Monthly on a fixed billing date	Immediate at the time of purchase
Installments and cash advance	Available	Not available
Transportation card feature	Available	Available

- Issuance of credit and debit cards

- To issue a credit card, the applicant's residency status, employment, assets, and financial transaction history in Korea are considered. Therefore, it may be difficult for foreigners without employment to obtain a credit card. It is recommended to confirm card eligibility with your bank or card issuer (page 64 of 『Guidebook on Financial Life for Foreigners』).
- Debit cards are generally issued together with bankbooks at the time of account opening (page 63 of 『Guidebook on Financial Life for Foreigners』).

➡ Currency exchange

- Exchanging Korean won to foreign currency
 - You can exchange up to USD 10,000 equivalent without submitting supporting documents (Article 6-2(3)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category	Requirement
Up to USD 10,000	No supporting documents required
Over USD 10,000	Supporting documents (e.g., certificate of foreign exchange purchase) required

- Even if no documents are required for exchanging up to USD 10,000, you must bring your passport as the foreign exchange bank must record the exchange on your passport (main sentence of Article 2-3(2)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However, for exchanges of KRW 1 million or less, you may exchange without a passport (proviso to Article 2-3(2)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Exchanging foreign currency to Korean won
 - If the amount exceeds USD 20,000 equivalent, documents proving the source of the foreign currency (e.g., foreign exchange transaction certificate) must be submitted (Subparagraph 1 of Article 2-2(1)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Reporting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Korea Customs Service
 - If the exchanged amount exceeds USD 10,000 per transaction, it will be reported to the National Tax Service and Korea Customs Service (Article 2-2(2) and Article 2-3(5) of 「Foreign Exchange Transactions Regulations」).

- ※ For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financial transactions for foreigners, refer to 「Guidebook on Financial Life for Foreigners」, available in 8 languages at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s E-Financial Education Center (<https://www.fss.or.kr/edu>).
- ※ Many banks now operate foreigner-specialized branches with weekend hours and multilingual staff, and offer language-specific call centers and banking services. Please visit each bank's website for further details.

Giao dịch tài chính

➡ Mở tài khoản (mở sổ tài khoản)

- Mở tài khoản
 -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mở tài khoản tiền gửi và tài khoản ủy thác tiền tệ tại Hàn Quốc để gửi ngoại tệ hoặc tiền Won Hàn Quốc và thực hiện các giao dịch tài chính (Khoản 1 Điều 2-6.2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Giấy tờ cần chuẩn bị
 - Các giấy tờ sau có thể được yêu cầu khi mở tài khoản. Loại giấy tờ cụ thể có thể khác nhau tùy theo ngân hàng và loại tài khoản, nên cần kiểm tra với các chi nhánh giao dịch hoặc trang web của từng ngân hàng (『Hướng dẫn mở tài khoản ngân hàng cho người nước ngoài』).

Phân loại	Loại
Chứng minh thư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hộ chiếu, chứng minh thư của nước xuất thân, v.v.
Giấy tờ chứng minh mục đích giao dịch tài chính ※ Nếu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không đầy đủ, chỉ có thể mở “tài khoản giới hạn mức giao dịch tài chính” với hạn mức rút/chuyển tiền hạn chế.	(Mục đích nhận lương) Giấy xác nhận công tác, biên lai khấu trừ thuế thu nhập, giấy xác nhận tham gia bảo hiểm sức khỏe (dành cho người đi làm), giấy chứng nhận thu nhập, hợp đồng lao động, v.v. (Mục đích nhận lương làm thêm) Bản sao giấy phép đăng ký kinh doanh của người sử dụng lao động, hợp đồng lao động, bảng lương, v.v. (Mục đích gây vốn kinh doanh) Hợp đồng giao dịch liên quan đến kinh doanh, bảng chi với nơi giao dịch, v.v. (Mục đích khác) Hồ sơ chứng minh mang tính khách quan, có thể xác nhận mục đích giao dịch
Tài liệu báo cáo thông tin tài chính theo Hiệp định thuế	(Nếu ghi là người đang cư trú ở Hàn Quốc) Thẻ đăng ký người nước ngoài, giấy xác nhận cư trú, thẻ khai báo nơi ở trong nước và giấy tờ chứng minh đã cư trú ít nhất 183 ngày (VD: trích lục quản lý xuất nhập cảnh), v.v. (Nếu ghi là người đang cư trú ở nước ngoài trên Giấy xác nhận bản thân) ※ Cần có mã số thuế ở nước ngoài, địa chỉ ở nước ngoài, thông tin liên lạc ở nước ngoài Giấy tờ chứng minh là người đang cư trú do chính quyền ở nơi cư trú của chủ tài khoản cấp

- Cách mở tài khoản

- Mở tài khoản bằng cách đến trực tiếp chi nhánh giao dịch của từng ngân hàng hoặc thông qua ứng dụng đối với một số ngân hàng.

➔ Chuyển tiền ra nước ngoài

- Chỉ định ngân hàng giao dịch ngoại hối

- Người nước ngoài khi chuyển các loại tiền sau ra nước ngoài phải chỉ định một ngân hàng ngoại hối cụ thể để giao dịch (Điểm 3 Khoản 1 Điều 10-11, Điểm 3 Khoản 1 và Khoản 2 Điều 4-4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Các loại tiền chuyển ra nước ngoài cần chỉ định ngân hàng ngoại hối

- Thu nhập từ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ù lao nhận được do làm việc hoặc tự kinh doanh
- Bảo hiểm xã hội, tiền phúc lợi và lương hưu được trả ở Hàn Quốc
- Khoản tiền tương đương tối đa 50.000 USD mỗi năm

- Phạm vi chuyển tiền

-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chuyển số tiền tương đương tối đa 50.000 USD mỗi năm thông qua ngân hàng ngoại hối chỉ định mà không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riêng (Tham khảo Khoản 2 Điều 4-4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Trường hợp khoản tiền vượt quá mức tương đương 50.000 USD mỗi năm hoặc thuộc các loại sau đây chỉ có thể được chuyển khi nộp giấy tờ chứng minh thu nhập chi tiết (Điểm 1, Điểm 2, Điểm 3, Điểm 7 Khoản 1 Điều 4-4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Khoản tiền chuyển ra nước ngoài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 Trường hợp thuộc phạm vi là phương thức thanh toán quốc tế được chuyển khoản hoặc mang vào từ nước ngoài. Tuy nhiên,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cư trú, chỉ áp dụng với phương thức thanh toán quốc tế khi chuyển khoản hay mang vào sau ngày nhập cảnh gần nhất.
 - Trong phạm vi đã khai báo mua bán phương thức thanh toán quốc tế với Thống đốc Ngân hàng Trung ương Hàn Quốc theo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Trong phạm vi thu nhập từ làm việc tại Hàn Quốc, thù lao nhận được do làm việc hoặc tự kinh doanh
 - Trong phạm vi bảo hiểm xã hội, tiền phúc lợi và lương hưu được trả ở Hàn Quốc
 - Khoản tiền được công nhận là thanh toán quốc tế theo Chương 7 (Giao dịch vốn) hoặc Chương 9 (Đầu tư trực tiếp và sở hữu bất động sản) của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Ví dụ về giấy tờ chứng minh) Giấy chứng nhận mua ngoại hối, giấy chứng nhận khai báo phương thức thanh toán quốc tế, bảng lương, giấy chứng nhận thu nhập, hóa đơn bảo hiểm, v.v.

※ Phương thức thanh toán quốc tế là gì?

- Là đồng ngoại tệ, phương thức thanh toán được thể hiện bằng đồng ngoại tệ cùng các phương thức thanh toán khác có thể sử dụng ở nước ngoài không phụ thuộc vào mệnh giá tiền tệ (Điểm 4 Khoản 1 Điều 3 「Luật Giao dịch ngoại hối」).

- Thông báo với Tổng cục Thuế và Tổng cục Hải quan
 - Nếu số tiền chuyển tương đương vượt quá 10.000 USD cho mỗi lần giao dịch thì sẽ được thông báo lên Tổng cục Thuế và Tổng cục Hải quan Hàn Quốc (Điểm 3 Khoản 1 và Điểm 5 Khoản 2 Điều 4-8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Cấp thẻ tín dụng & thẻ ghi nợ

- So sánh thẻ tín dụng và thẻ ghi nợ
 - Thẻ tín dụng là hình thức sử dụng trước rồi thanh toán lại số tiền đã sử dụng sau, còn thẻ ghi nợ có sự khác biệt là ngay khi sử dụng thẻ sẽ trừ số tiền đã sử dụng vào tài khoản ngân hàng. Có thể so sánh như sau (Tham khảo Viện Giám sát Tài chính - Bảo vệ người tiêu dùng tài chính - Hướng

dẫn viên giao dịch tài chính trong đời sống - Hướng dẫn giao dịch tài chính trong đời sống - Hướng dẫn về thẻ tín dụng).

Phân loại	Thẻ tín dụng	Thẻ ghi nợ
Nơi sử dụng	Nơi sử dụng thẻ tín dụng	Nơi sử dụng thẻ tín dụng
Cơ quan cấp	Công ty Thẻ tín dụng	Công ty Thẻ tín dụng
Hạn mức sử dụng	Trong hạn mức sử dụng	Trong số tiền đang có
Thanh toán	Ngày thanh toán quy định hàng tháng sau khi đã thanh toán trước qua thẻ	Ngay khi thanh toán
Sử dụng dịch vụ trả góp và tiền mặt	Có thể	Không thể
Tích hợp thẻ giao thông	Có thể	Có thể

- Cấp thẻ tín dụng và thẻ ghi nợ
 - Khi cấp thẻ tín dụng, cần xem xét nhiều điều kiện như tư cách lưu trú tại Hàn Quốc, công việc, tài sản, lịch sử giao dịch tài chính, v.v. Do đó, người nước ngoài không đi làm công ty có thể khó được cấp thẻ tín dụng, nên cần kiểm tra trước với ngân hàng hoặc công ty phát hành thẻ tín dụng về việc có thể cấp thẻ tín dụng hay không (Trang 64 『Sổ tay hướng dẫn giao dịch tài chính trong đời số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Thẻ ghi nợ thông thường có thể đăng ký cấp thẻ cùng với các chức năng của thẻ khi mở sổ tài khoản tại ngân hàng (Trang 63 『Sổ tay hướng dẫn giao dịch tài chính trong đời số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 Đổi tiền

- Đổi tiền Won sang ngoại tệ khác
 -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đổi số tiền tương đương tối đa 10.000 USD mỗi năm theo như sau mà không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riêng (Khoản 3 Điều 6-2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Phân loại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hay không
Từ 10.000 USD trở xuống	Có thể đổi mà không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Hơn 10.000 USD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giấy chứng nhận mua ngoại hối, v.v.)

- Khi đổi số tiền tương đương tối đa 10.000 USD, dù không cần giấy tờ chứng minh riêng nhưng vì ngân hàng ngoại hối phải biểu thị thông tin chi tiết về giao dịch ngoại hối trên Hộ chiếu, nên khi đổi tiền cần phải mang theo Hộ chiếu (Tham khảo Nội dung chính Khoản 2 Điều 2-3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Tuy nhiên, đối với số tiền từ 1 triệu won trở xuống, thì có thể đổi tiền mà không cần Hộ chiếu (Điều kiện Khoản 2 Điều 2-3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Đổi ngoại tệ thành tiền Won
 - Khi đổi số tiền tương đương vượt quá 20.000 USD, phải nộp các giấy tờ chứng minh nguồn gốc như giấy chứng nhận khai báo ngoại hối (Điều 1 Khoản 1 Điều 2-2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Thông báo với Tổng cục Thuế và Tổng cục Hải quan
 - Nếu số tiền đổi tương đương vượt quá 10.000 USD cho mỗi lần giao dịch sẽ được thông báo lên Tổng cục Thuế và Tổng cục Hải quan Hàn Quốc (Khoản 2 Điều 2-2 và Khoản 5 Điều 2-3 「Quy định giao dịch ngoại hối」).

※ Để biết thông tin chi tiết về giao dịch tài chính đối với người nước ngoài, bạn có thể tham khảo 「Sổ tay hướng dẫn giao dịch tài chính trong đời sống dàn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được dịch sang 8 ngôn ngữ tại <Trung tâm Giáo dục Tài chính Điện tử của Viện Giám sát Tài chính (<https://www.fss.or.kr/edu>) – Tổng quan nội dung – Ấn phẩm (phát hành 1 lần/ theo bộ)>.

※ Các ngân hàng thương mại hiện đang mở rộng và triển khai các chi nhánh chuyên phục vụ cho người nước ngoài mở cửa vào cuối tuần và có bố trí đội ngũ nhân viên người nước ngoài, cũng như tổng đài chuyên biệt và dịch vụ ngân hàng đa ngôn ngữ, nên hãy tham khảo trên website của từng ngân hàng.



법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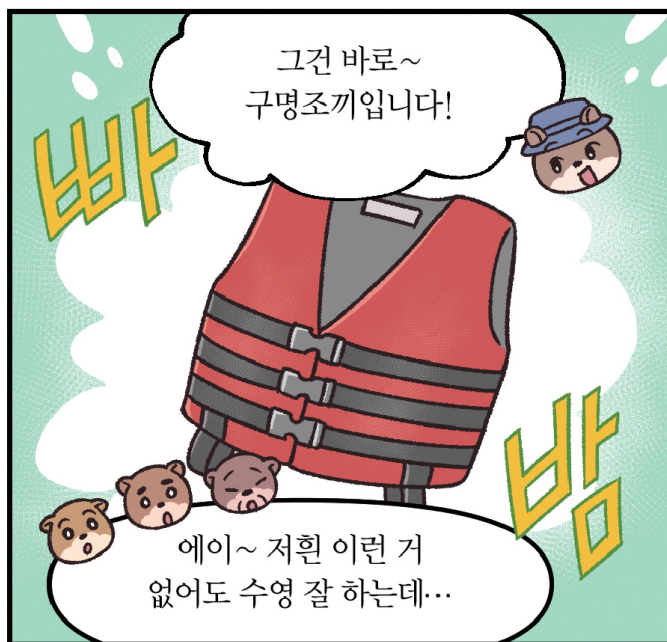


이슈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7. 1. 시행













주요 내용

-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합니다.
-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은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어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